

<별표 10> <개정 2009.7.6., 2014.12.12., 2016.6.28., 2017.3.22., 2017.5.8.>

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

(제3-25조제2항 관련)

평가부문		계량항목		비계량항목
공통 부문	자본 적정성	·순자본비율Ⅱ ¹⁾ ·조정레버리지비율 ·차입부채비율		·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·적정한 자본유지 가능성
	수익성	·자기자본이익률 ·수지비율		·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·영업별수익·비용 배분의 적정성
	경영관리	<삭 제>		·내부통제기준 설정·운영의 적정성 ·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정성 ·위험관리정책 및 운영의 적정성 ·경영관리의 적정성
업종 부문	투자 매매 · 중개업	유동성	·유동성비율(3개월) ·조정유동성비율(3개월)	·자금 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·유동성관리의 적정성
		자산 건전성	<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합병투자매매업자·투자중 개업자> ·고정이하자산비율 ·대손충당금 적립률 ·연체대출채권 비율 <그 외의 금융투자업자> ·고정이하자산비율	·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·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·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
	(부동산) 신탁업	유동성	·유동비율 ·고정장기적합률	·자금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·유동성관리의 적정성
		자산 건전성	·손실위험도가중자산비율 ·고정이하자산비율	·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·부실자산관리의 적정성

1)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순자본비율Ⅱ를 산정하는 경우, 금융감독원장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산식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.